

중국 유통·서비스 시장 진출 설명회

2004. 12. 21

kotra

●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04. 12. 21(화) 14:00~18:00
- 장 소 : KOTRA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KOTRA

● 세미나 진행순서

일정	내용	연사
14:00~14:10	인사말씀	KOTRA 동북아팀 이동철 팀장
14:10~15:20	How to Enter China Commercial Sector	상하이시 외국인투자 서비스센터 吳建華 경리
15:30~16:30	중국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전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박한진 차장
16:30~17:30	유통시장 진출시 유의사항	YEBBN 상하이 국제무역유한공사 이학진 총경리
17:30~18:00	질의 응답	참가자 전원

● 연사약력

○ 우지앤화(吳建華)

- 소속 및 직책 : 상하이시정부 산하 외국인투자 서비스센터 경리
- 학력 : 상하이 交通大學 졸업
- 주요 경력
 - Louis Vuitton, FedEx, Asahi Beer, Pioneer, Samsung, HanGlass 등 유명 다국적기업 중국진출 컨설팅
 - 중국 상장기업 경영 컨설팅 다수
- 참고 사항 : 상하이 컨설턴트 협회 등록 컨설턴트, 영어구사유창

○ 박한진

- 소속 및 직책 : 상하이무역관 차장
- 학력 : 상하이 復旦大學 기업관리 박사과정(다국적기업 전략 전공)
- 주요 경력
 - 재경부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 공군사관학교 교수 역임
- 참고 사항
 -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등 저서 8권
 - China Observer Weekly 발간
 - 중국 설명회 연사 300여 회

○ 이학진

- 소속 및 직책 : 태창엘칸토피혁/YEBBN 상하이국제무역유한공사 총경리
- 학력 : 국립대만사범대학대학원 졸업
- 주요 경력
 - 대만LG산전 근무
 - 동양엘리베이터 상하이 지사장
 - 엘칸토 중국 제조법인장 및 무역법인장
- 참고 사항
 - KOTRA 상하이무역관 해외통신원
 - 「상하이저널」 고정컬럼 게재

— 목 차 —

How to Enter China Commercial Sector 7

[상하이시 외국인투자 서비스센터 吳建華 경리]

중국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전망 21

[KOTRA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차장]

유통시장 진출시 유의사항 87

[태창엘칸토피혁/ YEBBN 상하이국제무역유한공사
이학진 총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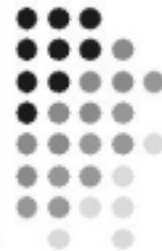
How to Enter China Commercial Sector

吳 建 華 경리
(상하이시 외국인투자 서비스센터)

상하이 交通大學 졸업
유명 다국적기업 중국진출 컨설팅
(Louis Vuitton, FedEx, Asahi Beer, Pioneer 등)
중국 상장기업 경영 컨설팅 다수
상하이 컨설턴트 협회 등록 컨설턴트, 영어구사 유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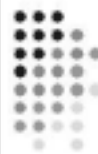
How to Enter China Commercial Sector

Jianhua WU
Shanghai Foreign Investment
Service Center
Dec 21, 2004



Main Content

- Laws, Regulations & Policies on Foreign Investment in Commercial Sector
- Practice on Establishment of Foreign Invested Commercial Enterprises ("FICE")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1. New Regulation

- "Administration Measures on Foreign Investment in Commercial Sector" (New Measures) was released by MOFCOM on April 16, 2004, which become effective from June 1, 2004.
- "Pilot Measures of Foreign Invested Commercial Enterprises" (Old Measures) jointly released by SETC and MOFTEC on June 25, 1999 was repealed.
- A major step to open the distribution and retail sectors to foreign investors
- Strictly according to China's commitment to WTO
- Lift many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commercial sector such as investor qualification, capital requirement and location
- Simplify the approval process of establish a FICE
- Present fresh opportunities for multinationals and foreign investors to establish effective distribution networks in China for their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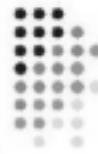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2. History

- State Council decided to set up 1-2 retail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ment in Beijing, Tianjing, Shanghai, Dalian, Guangzhou, Qingdao and 5 SEZs in 1992.
- Then State Council decided to set up 2 chain commercial enterprises totally in Beijing and Shanghai, several commercial enterprises with Taiwan investment in China mainland.
- The Old Measures were released in 1999 which permitted foreign investor to set up a FICE in province capitals.
- After more than 10 years since 1992, more than 260 FICEs have been approved in China and US\$ 3 million foreign investment were attracted.
- Many multinationals including Wal-Mart, Carefour, METRO, B&Q and OBI have been entered into China commercial sectors
- The issuance of New Measures means the normal stage of opening up.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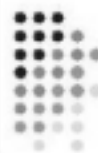
3. Impact



- The New Measures affect the following activities in China:
 - a) Wholesaling
 - b) Retailing
 - c) Import/Export
 - d) Franchising
- Foreign investors including foreign companies, individuals should set up a FICE in the form of EJV, CJV or WFOE to engage in the above activiti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4. Wholesaling



Business Scope:

- A wholesaling enterprise may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 a) merchandise wholesaling;
 - b) commission agency (excluding auction);
 - c) import and export of merchandise; and
 - d) related ancillary services.
- May engage in retailing and franchising at the same time if necessary approval is sought.

Definition of Related Ancillary services

According to the WTO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istribution services include "related subordinate services" such as assembly, sorting and grading of bulk lots; breaking bulk lots and redistributing into smaller lots; delivery services; refrigeration, storage, warehousing and garage services;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dvertising, installation and after sales services including maintenance and repair and training servic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4. Wholesaling

Investor Qualification

- Previously, the Old Measures provided that a qualified foreign investor had to have an average annual turnover of at least US\$ 2.5 billion in the last 3 years and a minimum asset value of US\$ 300 million in the last year.
- New Measures lift these restrictions, and provides that a qualified foreign investor is one who has good reputation without any illegal performance in China.
- Encourage these foreign investors with found financial status, advanced management experience and market skills, and broad sales network to set up FIC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4. Wholesaling

Requirements of setting up a wholesaling enterprise

- The minimum registered capital is reduced from RMB 80 million to the amount provided in the Company Law which is currently set at RMB 500,000.
- Subject to the proportion of total investment and registered capital for foreign investment.
- The term of operation of a FICE should be no more than 30 years or 40 years in middle/west China.

100% Foreign Ownership

- Start from December 11, 2004, foreign investors are permitted to set up 100% wholly foreign owned wholesaling enterprises.
- Previously, the Old Measures provided that foreign investors could hold a minority shares (less than 49%) in a wholesaling enterprise.

No Location Restriction

- Starting from December 11, 2004, wholesaling enterprises (either joint ventures or WFOEs) may establish their operations and branches anywhere in China.
- Previously, the Old Measures imposed geographic restrictions on foreign-invested wholesaling enterpris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5. Retailing

Business Scope

- A retailing enterprise may engage in the following activities:
 - a) merchandise retailing;
 - b) import of merchandise that it sells;
 - c) sourcing and procuring China produced goods for export;
 - d) related ancillary services.
- Retailing ways include tele-marketing, phone-marketing, mail order sales, internet sales and vending machine sales.

Investor Qualification

- Previously, the Old Measures provided that a qualified foreign investor had to have an average annual turnover of at least US\$ 2 billion in the last 3 years and a minimum asset value of US\$ 200 million in the last year.
- New Measures lift these restrictions, and provides that a qualified foreign investor is one who has good reputation without any illegal performance in China.
- Encourage these foreign investors with found financial status, advanced management experience and market skills, and broad sales network to set up FIC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5. Retailing

Requirements of setting up a retailing enterprise

- The minimum registered capital is reduced from RMB 50 million to the amount provided in the Company Law which is currently set at RMB 300,000.
- Subject to the proportion of total investment and registered capital for foreign investment.
- The term of operation of a FICE should be no more than 30 years or 40 years in middle/west China.

Requirements of opening stores

- Subject to the city development plan and commercial development plan if applying to open stores while applying to set up a retailing enterprise.
- Beside the above requirement, the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met if applying to open new stores for an already existing retailing enterprise:
 - **Pass the annual examination for FIEs; and**
 - **Paid all registered capital of the retailing enterprise.**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5. Retailing

Requirements of opening stores

- Land use rights of stores shall be obtained through public bidding, auction, tender offers and etc according to the land laws & regulations of China .
- The purpose of lands shall be for commercial use, not for industrial use or other uses.

100% Foreign Ownership

- Starting from December 11, 2004, foreign investors are permitted to set up 100% wholly foreign owned retailing enterprises.
- Previously, the Old Measures provided that foreign investors could only hold a minority shares in a retailing enterprise.

No Location Restriction

- Starting from December 11, 2004, retailing enterprises (either joint ventures or WFOEs) may establish their operations and stores anywhere in China.
- Previously, the Old Measures imposed geographic restrictions on foreign-invested retailing enterpris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5. Approval

Approval Authority

- Basically, almost all FICEs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 MOFCOM may authorize the provincial commerce departments to approve FICEs in future.
- Provincial commerce departments have the authority to approve applications to establish joint venture retailing enterprises provided that:
 - the trademarks and business name are owned by wholly Chinese-owned enterprises or Chinese natural persons;
 - the controlling interests are held by Chinese parties; and
 - the joint venture Retailing Enterprises do not deal with products listed in Articles 17 and 18 of the New Measures.
- Provincial commerce departments have the authority to approve applications from Retailing Enterprises established in their provinces to open retail stores provided such approvals are recorded with MOFCOM if:
 - the business area of any one store does not exceed 3,000 square meters, the number of stores in that province does not exceed 3 and the total number of similar stores opened by the Retailing Enterprise in China does not exceed 30; or
 - the business area of any store does not exceed 300 square meters, the number of stores in that province does not exceed 30 and the total number of similar stores opened by the Retailing Enterprise in China does not exceed 300
- and the applicant Retailing Enterprise does not have in its business scope:
 - tele-marketing, phone-marketing, mail order sales, internet sales and/or vending machine sales; or
 - retail of products listed in Articles 17 and 18 of the New Measur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5. Approval

Approval Process and Time

- Apply to Reserve the company name with Administration of Industry & Commerce
Obtain the Name Reservation Notice **5 days**
- Submit application to Shanghai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and Shanghai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Obtain the preliminary approval **20 days**
- Submit application to MOFCOM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Administration and Department of Market System Development)
Obtain the final approval **60 days**
- Apply the Certificate of Approval
Obtain the Certificate of Approval **3 days**
- Register with Shanghai Administration of Industry & Commerce
Obtain the Business License **20 days**

Total: 108 day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6. Document List

Documents of Foreign Investor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1 original or 1 notarized copy);
- Bank reference letter (2 originals);
- Passpor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2 copies);
- Audited financial report of last year (1 original);
- Business Introduction (1 copy).

Documents of FICE

- Feasibility Study Report (2 originals);
- Articles of Association (2 originals);
- Name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1 original);
- Foreign Invested Enterprise Registration Application Form (1 original);
- Appointment letter of the director of the Board (2 originals);
- Passport, names of the director of the Board (1 copy);
- Passport photo of the legal representative (1 original);
- House leasing agreement (2 originals);
- Property certificate (1 copy with the landlord's stamp);
- Company name in Chinese
- Total investment and registered capital, investment proportion, ways and time limit of contribution
- Business scope, scale of business and duration of business
- Catalogue for the commodity supplied by the FICE
- Catalogue for the commodity imported and exported
- Market analysis
- Management principle and position
- Management experience, concept, technology and equipment supported by the foreign investor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6. Document List

Information of FICE

- Basis for choosing location for FICE and the plan map
- Plan map, surrounding environment, population of location of the shops and the logistic center
- Arrangement of staff and organization (total number of the staff, the number of the management staff and other staff, organization chart)
- Comprehensive economic analysis (total annual income, cost, economic profit forecast, return period)
- Environment Protection and Fire Control

Proxy and Agency

- Power of Attorney (2 originals, if any);
- Consulting agreement (2 originals);
- Entrusting letter (2 original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7. Other ways

CEPA

- Commission Agents' Services and Wholesale Trade Services (excluding salt and tobacco)
Starting from January 1, 2004, Hong Kong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supply commission agents' services and wholesale trade services in the Mainland on a wholly-owned basis, and to set up wholly-owned external trading companies in the Mainland.
Starting from August 27, 2004, HK invested wholesaling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sale books, newspaper, magazine, pharmacy, pesticides and mulching film.
- Retail Trade Services (excluding tobacco)
Starting from January 1, 2004, Hong Kong investors are permitted to establish wholly-owned retailing enterprises in the Mainland.
Starting from August 27, 2004, HK invested retailing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sale books, newspaper, magazine, pharmacy, pesticides, mulching film and processed oil.
- Retail Trade Services (excluding tobacco) - Sole Proprietorships
Hong Kong permanent residents with Chinese citizenship are permitted to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rulings, individually owned retail stores to provide retailing services excluding franchising operation without the prior approval applicable to foreign investments. The sales area of such stores shall not exceed 300 square meter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7. Other ways

CEPA

- **Retail Trade Services (excluding tobacco) - Automobile Dealers**
Hong Kong companies are permitted to set up wholly-owned retail enterprises for sale of motor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n motor distribution.
- **Franchising**
Starting from January 1, 2004, Hong Kong enterprises are permitted to engage in franchising on a wholly-owned basis in the Mainland. Relevant regulations for franchising will be separately announced.

Manufacturing Enterprises

- Manufacturing enterprises may apply to expand its business scope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including import/export, wholesaling and retailing.

CEPA - Hong Kong Enterprises

- apply to HK Trade & Industry Development (TID)
- duly registered and established in HK
- same business as to be engaged in mainland
- pay profit tax in HK
- more than 3 year history
- substantial operation in HK
- employ 50% or more HK nese of total staff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7. Other ways

Re-invest in China by FIEs

An existing FIE may re-invest in domestic enterprises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should be met:

- **Registered capital has been fully paid up;**
- **Making profit;**
- **No illegal records;**
- **The amount of capital re-invested should be no more than 50% of its net assets.**

M&A Domestic Enterprises

- Subject to the Pilot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ors Acquiring Domestic Enterprises
- Appraisal of assets required
- The transaction should be done in Shanghai United Assets & Property Exchange

Wholesaling

- The New Measures prohibit foreign investors from wholesaling pharmaceuticals, pesticides and mulching film before December 11, 2004 and chemical fertilizers, processed oil and crude oil before December 11, 2006. The wholesaling of salt and tobacco is also expressly prohibited.

Retailing

- The New Measures prohibit foreign investors from retailing pharmaceuticals, pesticides, mulching film and processed oil before December 11, 2004 and chemical fertilizers before December 11, 2006. The retailing of tobacco is also expressly prohibited.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8. Continuing Restrictions

Books, Newspapers & Magazines

- FICEs which distribute books, newspapers and/or magazines are also to comply with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Distribution Enterprises.

Implementing Rules

- On June 18, 2004, MOFCOM held a meeting on implementing Rules of the New Measure. So it was said there would be an upcoming Implementing Rules. But as we know, no detailed implementing rules will be released.

Franchising

-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on on Commercial Franchising
- Pilot Measures of Administration on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Engaging Commercial Franchising Business

Direct Sales

- Administration Measures on Direct Sales Enterprises
- Administration Measures on Salesman
- Regulation on Anti Pyramidal Fraud

Auction Business

- FICEs that engage in auction business must also comply with relevant laws such as the Auction Law, the Cultural Relic Law, etc. and are to be approved by MOFCOM. Specific implementing regulations regulating such FICEs are to be promulgated separately.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9. Drafting Regulations

Automobiles

- Automobiles Trade Policies
- Implementing Measures of Administration on Automobiles Brand Sales
- Administration Measures on Circulating of Second Hand Automobiles

Processed Oil

- Retailing Enterprises which operate gasoline stations and retail processed oil must have a stable source of processed oil supply. Its operating facilities must also comply with current State standards, fire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ther such requirements. Specific implementing measures are to be promulgated by MOFCOM separately.

Pharmacy

- FICEs dealing with pharmaceuticals are also required to comply with relevant State standards on the administration of pharmaceutical sales. MOFCOM shall promulgate separate specific implementing rules to regulate such FICE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10. Case Study

Represented Clients (only in commercial sector)

- | | | | |
|-----------------|--------------|------|-----------|
| • Louis Vuitton | Saint-Gobain | Cash | New World |
| 景福珠宝 | Hitachi | Yolo | SKF |
| Grainier | Seven Star | | |

Investor Qualification

- good reputation without any illegal performance in China
- found financial status
- advanced management experience and market skills
- and broad sales network

Total Investment & Registered Capital

Proportion of Total Investment & Registered Capital

Ordinary Value Added Tax Payer

Legal Address

How to Entry China Commercial Sector

중국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전망

박 한 진 차장
(KOTRA 상하이무역관)

復旦大 기업관리 박사과정(다국적기업 전략관리 전공)
재경부 중국전문가 포럼 위원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등 중국관련 저서 8권
중국 경제 강의 300여 회
공군사관학교 교수 역임

목 차

- | | |
|------------------------------|------------------|
| 1. 유통 서비스 / 24 | 10. 건축 서비스 / 73 |
|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 32 | 11. 컴퓨터 서비스 / 77 |
| 3. 통신 서비스 / 43 | 12. 부동산 서비스 / 78 |
| 4. 광고 서비스 / 48 | 13. 법률 서비스 / 81 |
| 5. 문화오락 서비스 / 53 | 14. 금융 서비스 / 82 |
| 6. 의료 서비스 / 57 | 15. 환경 서비스 / 85 |
| 7. 교육 서비스 / 61 | 16. 기타 서비스 / 86 |
| 8. 요식 및 관광 서비스 / 65 | |
| 9. 건축 설계/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 / 69 | |

중국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전망

KOTRA 중국지역본부/상하이무역관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2001년 이후 외국 서비스업자는 합자기업을 설립, 수입품과 중국산 제품의 중개·도매업이 가능하나 서적,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은 2004년 12월 11일 이후,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는 2006년 12월 11일 이후 유통업을 허용함 2003년 12월 11일 이후 합자기업내 외자 다수 지분 허용 및 지역, 수량제한 폐지 2001년 12월 11일 이후 합자기업의 형식을 통한 외국 서비스업자의 소매서비스 제공 가능. 2003년 12월 11일 이후 합자소매기업의 외국측 다수지분을 허용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 경영 허용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배송은 외국인투자 장려산업에 속함. 그러나, 시장진입 조건과 시간은 외국인투자 제한산업에 따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아래와 같음: 1.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온라인판매, 프랜차이징,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 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배송; 2.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3.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4. 상품경매; 5. 화물임대; 6. 정제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7. 대외무역;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설립 조건: ▲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 <公司法>의 규정에 부합해야함(도매 50만위안, 소매 30만위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함;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 초과 불가(중서부 지역은 40년 초과 불가)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점포개설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유통기업 설립 신청과 동시에 점포설립 신청시에는 도시발전 및 도시유통발전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함	유통 서비스 영역의 핵심 법률인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유통관리방법)의 시행세칙이 12월 11일까지 발표되지 않아 관리방법의 효력 여부가 불분명함(각 도시의 외국인투자 신청서 접수 창구는 12월 13일 현재 일단 서류는 접수한후 상무부로 보고하며 이에 대한 허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 프랜차이징, 정제유, 약품 유통, 경매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도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음 프랜차이징, 직접판매 관리조례는 2005년 상반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직접판매의 경우, 개방은 하되 진입 문턱을 여전히 높게 할 것으로 관측됨

주 :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 <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은 중국 상무부가 2004년 4월 16일 공포, 6월 1일부로 시행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2003년 12월 11일이후 소매유통업 개방 지역을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青島, 重慶, 寧波, 鄭州, 武漢을 포함한 모든 직할시와 성도(省都)로 확대함 2004년 12월 11일 이후 아래 조건을 제외한 제한 조치는 취소함: △화학비료 소매는 2006년 이후 제한 조치 취소; △분점 30개 이상인 연쇄점, 각종 차량 판매점 및 대외무역 제한을 받는 제품은 외국측 소수지분만 허용(차량판매 제한은 2006년 12월 11일이후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함) 2004년 12월 11일이후 프랜차이징 및 무점포 도매, 소매업 제한조치 취소	개방 순서는 아래와 같음: 1. (식염, 연초를 제외한)중개, 도매는 2002년 12월 11일이전 외자 지분을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나 서적.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완성유, 원유는 제외; 2003년 12월 11일 외자 지분비율 및 지역.수량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유통 허용; 2006년 12월 11일 이전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 유통 허용; 2. (연초를 제외한) 소매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나 서적.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는 제외함; 2002년 12월 11일이전 외자지분을 50%까지 허용하며 서적.신문,및 지역.수량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이전 서적, 신문.잡지 유통 허용;	▲이미 설립 허가된 유통기업이 점포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 조건외에도 ①외국인투자기업 연도검사를 시한내 받고 이를 통과해야 하며;②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해야함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영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유통 서비스에 종사해야 함. 동일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누계 3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고 취급 상품이 도서.신문.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부터 제한 조치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완성유, 곡물, 식물유, 면화 등이며 상품의 브랜드와 공급상이 서로 다를 경우, 외국 투자자의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자동차 소매업 관련 세부 규칙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정제유 도매와 소매는 여전히 중국 기업의 독점경영체제에 있어 외자 진출방식은 합자 조건(중국 측 지배지분 보유)에 국할 것으로 예상됨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유통 허용; 2006년 12월 11일이전 화학비료 유통 허용 3. 차량판매(2006년 12월 11일이전 제한조치 폐지), 서적,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 화학비료, 곡물, 식물유, 설탕, 연초, 면화는 분점 30개 초과시 외국측 지배지분 불허; 4. 프랜차이징과 무점포 도매와 소매는 2004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인투자를 허용 도서, 신문, 간행물의 출판과 발행, 수출입 업무는 외국인투자 금지 영역에 속함. 기타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 소매기업 및 그 점포의 설립 지역은 2004년 12월 11일까지는 성도(省都) 소재지,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로 제한하나 2004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지역제한을 취소함 외국인투자 도매기업은 2004년 6월 1일부터 지역제한을 취소 중국 경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내 투자 잠정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부합해야 하며 ‘유통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외국인투자 농부산물, 농업생산재(농약, 농업용 필름 제외) 유통기업은 지역, 지분,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음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2002년 12월 11일 이후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도서, 신문, 잡지 소매업 종사를 허용;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국 서비스 종사자의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 소매를 허용; 2006년 12월 11일 이후 화학비료 소매를 허용 2001년 12월 11일 이후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관련된 부대 서비스업(화물분류, 냉장, 창고, 판촉, 마케팅, 광고, 유지보수, 교육훈련 애프트 서비스 포함) 종사를 허용함		‘유통관리방법’의 관련 정의: - 중개(대리업무, 佣金代理) : 제품 판매 대리상 또는 기업경영인, 경매인, 기타 도매상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 - 도매(批發) : 소매상, 공업, 상업, 기관 또는 기타 도매상의 제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 소매(零售) : 고정 장소 및 전화,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활동; - 프랜차이징(特許經營) : 사례금 및 특허경영비의 획득을 위해 계약을 맺고 타인에게 그 상표, 상호, 경영모델 등을 양도하는 서비스.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비준을 거친 외국인투자 소매유통 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①상품 소매; ②자영상품의 수입; ③중국내 제품 소싱-수출. 외국인투자 도매유통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①상품 도매; ②중개; ③상품 수출입. 외국인투자 도매유통기업은 식염, 연초 도매업은 경영 불가; 외국인투자 소매유통기업은 연초 소매업은 경영 불가 2003년 5월 1일부터 외국 투자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도서.신문.간행물 소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할수 있으나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유통기업 입지는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함;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중·외 투자 쌍방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도서.신문.간행물 유통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 위법, 위규 기록이 없어야 함; ▲법정 대리인 또는 총경리는 중급 이상의 발행원(發行員)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발행전문 인력은 출판물 초급 이상의 발행원 직업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경영업무에 상응하는 고정 경영장소를 보유해야 함; ▲등록자본금 500만圓 이상; ▲경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03년 5월 1일부터 외국 투자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도서.신문.간행물 도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할수 있으나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유통기업 입지는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함;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중·외 투자 쌍방이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도서.신문.간행물 유통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 위법. 위규기록이 없어야 함; ▲도매업무에 상응하는 고정 경영 장소를 보유하고 영업 면적 50 평방미터 이상, 독립적으로 설치한 경영장소의 영업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 ▲등록자본금 3,000만圓 이상; ▲경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정 대리인 또는 총경리는 중급 이상의 발행원(發行員)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발행전문 인력은 출판물 초급 이상의 발행원 직업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비준을 거친 외국인투자 도서.신문.간행물 유통기업은 온라인 판매, 연쇄경영, 독자클럽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1. 유통 서비스(도매, 소매, 프랜차이징, 무점포 판매 등)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시점 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試點辦法; 법적으로는 2004년 6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됐으나 일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관리 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管理辦法) ‘소매업체분류 국가표준 실시 관철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務部關於貫徹實施零售業態分類國家標準的通知) ‘외국인투자 도서.신문.간행물 유통기업 관리방법’(外商投資圖書.報紙.期刊分銷企業管理辦法)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	---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해상운송: △정기선(여객포함), 산적(散積), 비정기선(여객포함) 및 기타 국제 외항 운송업 허용 △등록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조건하에서 영업 가능. 그러나, 합자 해상운수회사의 외국측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자기업의 이사회 주석과 총경리는 중국측이 임명함 해상운송통관 서비스: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측 다수 지분 보유 허용함 해상운송대리서비스: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측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도로운송업: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측 다수 지분을 허용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후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함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1. 철도주간선망의 건설, 경영; (중국측 지배적 지위) 2. 지선철도, 지방철도 및 교량, 터널, 페리 시설 건설 및 경영; (합자, 합작에 국한) 3. 도로, 독립교량 및 터널 건설, 경영; 4. 공용부두시설의 건설, 경영; 5. 민간 비행장의 건설, 경영; (중국측 지배적 지위) 6. 항공운송사(중국측 지배지위); 7. 농업, 임업, 어업범용 항공회사 (합자, 합작에 국한); 8. 정기·비정기 국제 해상운송; 9.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10. 육상 도로화물 운송; 11. 송유관, 가스관 및 유류 저장 탱크, 석유전용부두 건설, 경영; 12. 석탄파이프라인 수송설비의 건설, 경영; 13. 운송 관련 창고저장설비의 건설, 경영.	국제화물운송대리: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합자, 합작, 독자(독자 개방시기는 별도 공포) 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설립 허용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합자, 합작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외국투자자는 지분 인수합병 방식으로 이미 설립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으나 지분 비율 및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규정된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함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중외 합영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중국측 합병자 중 적어도 1개사는 국제화물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거나	외국인투자 일반 물류기업과 제3자 물류서비스기업은 아직 보세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함 수출입 세수제도 개선 작업의 진전 상황에 따라 지역 제한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운송 서비스는 중국내 각 지방 업체들의 보호주의가 심해 단기간내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u>창고업</u>: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 하 되 외국측 다수 지분을 허용하고 2004년 12월 11일 이후 제한조치를 폐지하고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u>화물운송대리업</u>: 최소 3년 연속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외국측 다수 지분을 허용하며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최소 등록자본금은 100만 달러 이상이며 합자기업의 경영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중국내 경영 개시 1년 이후 합자 쌍방의 자본금이 모두 납부된 후에는 지사(分支機構)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사 증설시마다 요구되는 등록자본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를 실시함	<u>장려업종의 세부 조건</u>: 1.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운송: 외자 비율 49% 이하; 2.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외자 비율 50% 이하, 2002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2005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측 독자경영 허용; 3. 도로화물 운수 : 2002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2004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측 독자 경영 허용. <u>외국인투자 제한업종</u>: 1. 도로여객운송; 2. 국경출입 자동차 운송; 3. 수상운송; 4. 철도화물운송; 5. 철도여객운송; (중국측 지배적 지위) 6.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의 범용 항공. (중국측 지배적 지위)	또는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거나 또는 관련 교통운수 또는 창고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은 중국측 합영자 가운데 제1주주여야함; (2)외국측 합영자 중 적어도 1개사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써 이러한 기업은 외국측 합영자 가운데 제1주주여야함; (3)중외합영자는 신청일 기준 3년 내 위규 행위가 없어야함.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최저 등록자본금 100만 달러 이상; (2)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업무 인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업무 인원을 최소 5명 이상 두어야함;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u>제한업종의 세부 조건:</u> 1. 국경출입 자동차 운송 : 2002년 12월 11일이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2004년 12월 11일이전 외국측 독자 경영 허가; 2. 수상운송 : 외자비율 49% 이하; 3. 철도화물운송 : 외자 비율 49% 이하, 2004년 12월 11일이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 2007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측 독자 경영 허용. <u>외국인투자 금지업종:</u> 1. 항공교통관제; 2. 통신.	(3)고정 영업장소가 있어야함; (4)필요한 통신, 운송, 하역, 포장 등 영업시설을 보유해야함; (5)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u>도로운송업:</u> 아래와 같은 방식의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업 경영을 허용함: (1)중외합자 방식의 도로여객운송업 투자, 경영; (2)중외 합자, 합작 방식의 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창고 및 기타 도로운송과 관련된 보조성 서비스 및 차량유지보수업무 투자, 경영; (3)독자 방식의 도로화물운송,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창고 및 기타 도로운송과 관련된 보조성 서비스 및 차량유지보수업무 투자, 경영;(이 분야는 미개방 상태이며 구체적인 시점은 별도 공포)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업은 국무원 교통주관 부처가 지정한 도로운송 발전정책과 기업자질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 소재지의 교통주관 부처가 제정한 도로운송업 발전계획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함.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의 투자 각 방은 자기 자산으로 투자해야 하며 양호한 신용상태를 유지해야 함. 도로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주요 투자자중 적어도 일방이상은 중국내 5년이상 도로여객운송업에 종사한 기업일 것; (2)외자 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3)기업 등록자본금의 50%는 여객운송 기초시설 건설과 개선에 투입해야함;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4)투입 차량은 중급이상일 것.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의 경영 기한은 일반적으로 1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투자액 가운데 50% 이상의 자금을 여객,화물 터미널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할 경우, 경영 기한을 20년으로 할 수 있음. 자동차 리스업: 외국인투자자의 중외합자 자동차 리스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도로운송경영허가증'(道路運輸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중외합자 자동차 리스기업의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1)자동차를 20대 이상 배치해야하며 차량가치가 200만원이상이어야함; 리스 자동차는 신차이거나 1급 기술등기 수준에 도달한 차량이며 유효한 차량운행증명서를 구비해야함;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2)자동차 차량가치의 5%이상의 유동자금을 보유해야함; (3)고정된 경영 및 사무 장소를 보유하고 주차장 면적은 정상면적의 1.5배 이상이어야함; (4)필요한 경영기구와 이에 상응하는 관리요원을 두고 경영관리, 차량기술, 재무회계 등의 직위에 초급 이상의 직명을 가진 전문기술요원을 별도로 1명 두어야함; (5)법인자격을 구비해야함; (6)현지 산업발전정책에 부합해야함. 물류업: 외국투자자가 합자, 합작 방식으로 국제유통물류, 제3자 물류업무에 투자, 경영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투자자는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1)국제유통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을 설립하는 투자자 가운데 적어도 일방은 국제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송 또는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에서 양호한 실적과 운영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측 투자자의 제1주주여야함; (2)제3자 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을 설립하는 투자자 가운데 적어도 일방은 교통운송 또는 물류 업무에서 양호한 실적과 운영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는 중국측 투자자 또는 외국측 투자자의 제1주주여야함.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1)최저 등록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2)국제유통물류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의 경외(외국) 투자자의 지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3)고정된 영업장소를 갖출 것; (4)종사하는 경영업무에 필요한 영업시설을 갖출 것; (5)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규정에 따라 중국내 기타 지역에 분공사를 설립할 수 있음. 현재 北京, 天津, 上海, 重慶, 浙江, 江蘇, 廣東, 深圳경제특구가 시범 시행 지역임.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국제해상운송서비스는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을 포함하나 연해와 내륙수상운송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도로운송은 도로 트럭,자동차화물 운송 및 도로여객운송을 포함함 창고서비스는 컨테이너 야적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화물운송대리서비스는 화물검사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u>국제화물운송대리업:</u>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은 비준을 거쳐 아래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경영할 수 있음: (1)선창주문(선박임대, 항공기임대, 선창임대), 탁송, 창고보관, 포장; (2)화물의 선적감독, 하역감독, 컨테이너의 집합 분리작업, 분견(分遣), 중개 및 관련 단거리 운송 서비스; (3)통관수속 대행, 검증대행, 검사대행, 보험; (4)관련 증빙 서류 제작, 운임납부, 결산 및 잡비 납부; (5)국제전시품, 개인 물품 및 국경 통과 화물의 운송대행; (6)국제복합운송, 컨테이너 운송(컨테이너의 집합분리 포함); (7)국제특사우편(개인 서한과 현금 이상의 당, 정, 군 기관 공문서의 우송 업무는 포함하지 않음); (8)컨설팅 업무 및 기타의 국제 화물 운수 대리업무.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도로운송업은 도로여객운송, 도로 화물운송,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 화물창고저장 및 기타 도로 운송 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 차량 정비를 포함 자동차 리스업무는 공공차량 및 택시의 승객운수 이외의 각종 객차, 화물차, 특수차량의 리스경영 활동을 말하며 자동차금융리스는 포함하지 않음 물류업: 외국인투자 물류기업은 비준을 거쳐 아래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경영할 수 있음: (1)국제유통물류업무 : 화물 수출입 업무의 자체 경영 또는 대리 와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대리수출입 업무를 포함하는 수출입업무와 관련서비스, 그리고 해운, 항공운수, 육상 수출입화물의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	

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2)제3자 물류업무 : 도로보통화물 운수, 보관, 하역, 가공, 포장, 배 송 및 관련 정보처리서비스와 자 문업무, 국내화물운송대리업무, 컴 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물류 관리 및 운용	
기타 사항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 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 (Horizontal Commitments) 중국 정부는 아래 항만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항과 조 건으로 국제해상운송 제공자가 획 득할 수 있도록함: 항로 안내, 견인 보조, 물자 공급, 유류 및 용수 공급, 쓰레기 수집, 폐기물 처리, 조항 설비, 긴급수리 시설 등.		국제화물운송대리업: 동일 외국합영자가 중국내에 국제 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하여 경 영개시 2년 미만인 경우, 두번째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을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이 정식 개업후 만 1년이 경과하 고 합영 각 방의 출자금에 도착하 면 중국내 기타 지역내 지사(분공 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 나, 지사 1개 추가시마다 등록자 본금 12만 달러를 증가해야함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관리방법’(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代理企業管理辦法) 및 그 보충 규정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外商投資道路運輸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자동차 리스업 잠정규정’(汽車租賃業暫行規定) ‘외국인투자 물류기업 시범설립 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關於開展試點設立外商投資物流企業工作有關問題的通知)			

3. 통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택배: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기업 설립과 외국측 다수 지분보유를 허용하며(단, 중국우정부문의 전문 경영 서비스 영역은 제외)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 허용 부가통신 서비스: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각 지역내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지만 외자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초통신 서비스: (1)무선호출서비스: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중국 각 지역내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지만 외자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2)이동전화(음성, 정보)서비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및 세부 조건: ○부가통신, 기초 통신업 중 무선 호출 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외자 비율 30% 이하로 제한,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 비율 49% 이하,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비율이 50%까지 허용 ○기초 통신업 중 음성 및 정보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외자 비율 25% 이하로 제한;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 비율이 35% 이하,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2006년 12월 11일까지 외국인 독자투자 허용.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와 함께 중국에서 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 방식으로 공동 투자해서 아래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을 허용함. 외국인투자통신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함: (1)전국 혹은 성(省)간 범위의 기초통신업무를 경영할 시 최저 등록자본금은 20억 元; 부가통신서비스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00만 元; (2)성급 범위이내의 기초통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 元; 부가통신서비스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100만 元.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기초통신 및 부가통신 서비스 업무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통신업은 중국 정부에게 매우 민감한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개방 속도가 느림 법률적으로는 점진적인 개방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쟁정책 확대, 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혁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 비용대비 예상수익 저조로 단기간 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유망 분야 - PCL 장비, B-WLL,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관련 분야 - 전용회선, 광케이블 등 - CDMA 사업 지분참여 - 로밍서비스 업무제휴 - 인터넷폰 솔루션,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장비, 무선인터넷 등

3. 통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 지분율 25% 미만의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2002년 12월 11일까지 대상 지역을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로 확대하고 외국 지분율 35%까지 허용함;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자 지분율을 49%까지 확대하고 2006년 12월 11일까지 지역제한 폐지 (3)국내 및 국제통신 서비스: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율 25%미만의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2006년 12월 11일 이후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의 각 도시 및 도시간 서비스로 대상지역을 확대(외자 지분율 35% 미만); 2007년 12월 11일 이후 지역제한 폐지, 외자지분율 49%까지 허용	○ 기초 통신업 중 국내·국제업무 :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만, 외자 비율 25% 이하로 제한. 2006년 12월 11일까지 외자 비율 35%까지 허용하며, 2007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 우편(郵政公司)	(1)기초통신업무(무선호출업무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자 비율은 최종적으로 49%를 초과할 수 없음; (2)부가통신업무(기초통신업무중의 무선호출업무 포함)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외자 비율은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음; (3)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출자할 경우의 지분 비율은 국무원 신식산업(정보통신) 주관 부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함. 기초통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2)경영활동종사에 상응한 자금과 전문인력 보유;	

3. 통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3)국무원 신식산업(정보통신) 주 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승인 및 특정업종 요구조건에 부합; (4)‘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중국측 투자자란 전체 중국측 투자자중 출자 금액이 가장 많고 중국측 전체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출자자를 지칭함. 기초통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 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기업법인자격 보유; (2)등록지 국가(또는 지역)에서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 취득; (3)경영활동종사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원 보유; (4)기초통신업무에 종사한 양호한 영업실적과 운영경험 보유; (5)‘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외국측 투자자란 전체 외국측 투자자중 출자	

3. 통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금액이 가장 많고 외국측 전체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출자자를 지칭함.	
경영 내용	부가통신서비스: 공용통신망설비를 이용한 통신 및 정보서비스 제공 업무: (1)전자우편; (2)음성메일; (3)온라인정보 집적, 검색; (4)전자데이터교환; (5)온라인데이터 및 교역처리; (6)부가팩스; (7)인터넷접속서비스; (8)인터넷정보서비스; (9)화상전화회의서비스. 이동전화(음성, 정보) 서비스: 아날로그/디지털/셀룰러서비스 및 개인통신서비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은 법에 따라 '통신업무경영허가증'(電信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하고 이 허가증에 명시된 아래와 같은 범위내에서 통신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기초통신서비스: (1)고정망 국내 장거리 및 시내 전화 서비스; (2)이동전화 및 데이터서비스; (3)위성통신 및 위성통신 서비스; (4)인터넷망 및 기타 공공데이터 전송 서비스; (5)광대역, 파장, 광케이블, 관로 및 기타 통신망요소 임대, 판매 서비스; (6)국제통신 기초설비, 국제통신 서비스; (7)무선호출서비스;	

3. 통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u>국내통신 서비스:</u> 음성 서비스; 분할교환디지털전송 업무; 회선교환디지털전송업무; 팩스서비스; 국내전용회선 임차서비스 <u>국제통신 서비스:</u> 음성 서비스; 분할교환디지털전송 업무; 회선교환디지털전송업무; 팩스서비스; 국제전용회선 임차서비스		(8)기초통신서비스의 재판매. <u>부가통신서비스:</u> (1)전자우편; (2)음성메일; (3)온라인정보 집적, 검색; (4)전자데이터교환; (5)온라인데이터 및 교역처리; (6)부가팩스; (7)인터넷접속서비스; (8)인터넷정보서비스; (9)화상전화회의서비스.	
기타 사항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 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 (Horizontal Commitments)			
관계 법령.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업무 분류목록> 재조정에 관한 통고’(關於重新調整<電信業務分類>目錄的通告)			

4. 광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u>국경간 공급 광고서비스</u> (Cross-border supply): 중국에 등록된 기업으로써 외국광고 서비스 제공권을 보유한 광고 대행사에 한함 <u>해외소비 광고서비스</u> (Consumption abroad): 중국에 등록된 기업으로써 외국광고 서비스 제공권을 보유한 광고 대행사에 한함 <u>중국내 상업적 주재 광고 서비스</u> (Commercial presence):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내 광고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2003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측 다수지분 보유를 허용;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자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u>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및 세부 조건:</u> 외자 비율이 49% 이하;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지분 보유 허용;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측 독자경영 허용	중외합자.합작 광고회사의 외국측 최대 지분을 49%를 2004년 3월 2일 이후 70%까지 확대함; 2005년 12월 10일부터 외국인 독자 광고회사 설립을 허용함(홍콩 및 마카오지구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독자광고회사 설립을 허용).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1)종합성 광고기업 : ①광고경영에 상응한 경영관리인원, 기획 디자인인원, 제작인원, 시장조사인원(이상의 인원은 모두 광고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함), 재무회계인원을 보유해야하며 그 중 전문요원은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전체 종업원 수의 2/3 이상 이어야함;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측 독자경영 허용과 함께 사실상 전면 개방 단계로 진입

4. 광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②광고 디자인, 제작, 대리업무에 상응하는 자금, 설비, 경영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등록자본금과 경영장소 면적은 각각 50만 元과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함; ③광고경영범위에 상응하는 경영기구 및 광고경영관리제도를 보유해야함; ④전문 광고심의원을 두어야함 (2)광고디자인, 제작기업 : ①광고경영에 상응한 경영관리인원, 기획디자인인원, 제작인원, 시장조사인원(위 인원은 모두 광고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함), 재무회계인원을 보유해야하며 그 중 전문요원은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전체 종업원 수의 1/2 이상이어야함; ②광고경영범위에 상응하는 자금, 설비, 기자재, 장소를 보유하고 경영장소는 40평방미터 이상이며 제작장소는 광고제작 프로그램에 따라 정함;	

4. 광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③광고경영범위에 상응하는 경영 기구 및 광고경영관리제도를 보 유해야함; ④전문 광고 심의원을 두어야함.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1)합영 각 방은 반드시 광고업무 경영기업이어야 함; (2)합영 각 방은 반드시 설립후 2 년이상 운영한 기업이어야함; (3)광고영업실적이 있어야함. 외자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 을 구비해야함: (1)투자자는 반드시 광고업무경영 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어야함; (2)투자자는 설립후 3년이상 운영 한 기업이어야 함.	

4. 광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광고경영업무의 범위: (1)국내 각종 광고의 디자인, 제작, 배급, 대리; (2)디자인, 인쇄품 제작, 영화 및 TV, 광고작품.	
기타 사항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 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 (Horizontal Commitments)		지사(分支機構)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반드시 아 래의 기본 조건을 구비해야함: (1)등록자본금 전액 납부; (2)年광고영업액 2,000만圓이상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내 광 고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광고업 에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廣告 企業管理規定)의 조건에 따라 집 행함.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광고심의 원직을 두고 ‘광고심의원교육훈련 합격증’(廣告審查員培訓合格證書) 을 취득한 자를 초빙, 내부 광고 심의업무를 해야함.	

4. 광고 서비스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廣告企業管理規定) '광고 심의원 관리업무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지도 의견'(關於廣告審查員管理工作若干問題的指導意見<試行>) '광고 경영자, 광고 배급자의 자질 표준 및 광고경영범위 심사결정 용어 규범'(廣告經營者, 廣告發布者資質標準及廣告經營範圍核定用語規範)
----------	--

5. 문화오락 서비스(시청각서비스, 영화상영관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u>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u> (1)영화관의 건설, 경영은 중국측이 지배지분을 보유함; (2)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은 합자에 한하며 중국측이 지배지분을 보유함. <u>외국인투자 금지업종 내역:</u> (1)AV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배급과 수입업무; (2)신문사; (3)각급 방송국, TV, 라디오 네트워크(유선 TV네트워크 및 송신국, 중계소 포함); (4)방송, TV 프로그램의 제작, 출판, 배급, 방영; (5)영화제작, 배급; (6)비디오 방영회사. 기타 부문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u>영화관:</u>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의 회사, 기업과 중외 합자, 중외합작기업을 설립, 영화관 건설, 개조, 영화상영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영화관 설립은 허용하지 않음. 외국인투자 영화관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현지 문화시설의 조직과 계획에 부합해야함; (2)최저 등록자본금은 600만원; (3)고정 영업(상영)장소 보유; (4)중외합자 영화관의 중국측 합영자의 등록자본금내 투자비율은	중국의 개방 추세와 외국 기업들의 진출 모색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은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까다로운 시장진입 조건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다만, 문화 서비스업 중 도서유통 분야는 개방이 진전돼 2005년에 대형 합자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

5. 문화오락 서비스(시청각서비스, 영화상영관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51%이상 이어야 하며, 北京, 上海, 廣州, 成都, 西安, 武漢, 南京 등 시범도시의 중외합자 영화관의 경우, 외국측 지분 비율은 최고 75%를 초과할 수 없음; (5)합자, 합작기한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 지구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에서 합자, 합작 형식으로 영화관의 건설, 개조,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홍콩 및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지분율은 최고 75%까지 인정. 외국인투자 영화관은 건설, 개조 작업을 마치고 관련 부문의 검수에 합격한 후 '영화방영경영허가증'(電影放映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만 영화상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5. 문화오락 서비스(시청각서비스, 영화상영관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시청각서비스의 범위: (1)영상제품의 판매(비디오테이프 임대 포함); (2)음향제품의 판매.		AV제품판매 중외합작형식의 투자 허용. 중외합작 AV제품 판매기업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기업의 설립과 발전이 AV제품 발전계획에 부합; (2)독립법인의 자격 보유; (3)중국의 AV제품 판매기업 설립에 관한 조건에 부합; (4)경영규모에 상응한 자금력 보유; (5)중국측 합작자의 보유 권익이 51% 이상; (6)합작기한은 15년 이하. 영화관 업무의 범위: 중국산 또는 합법적인 수입 영상물의 방영 업무를 의미하며 영업성의 비디오, VCD, DVD 상영은 할 수 없음	

5. 문화오락 서비스(시청각서비스, 영화상영관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AV제품 판매범위: 도매, 소매, 대여업무를 포함하며, AV제품이란 내용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음반, CD, VCD, DVD 등을 말함; 비준을 거치면 AV 제품의 체인점 운영과 정보 네트워크(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가능함; 중외합작 AV 제품 판매기업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AV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AV제품의 수입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기타 사항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Horizontal Commitments)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영화관 잠정규정'(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중외합작 AV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中外合作音像製品分銷企業管理辦法)			

6. 의료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외국측 서비스 제공자와 중국측 합자파트너의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 외국측 다수 지분이 가능하나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의 숫자 제한 가능.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중외 합자 및 중외 합작만 허용 (외국인독자 불허).	중외합자, 중외합작 방식의 의료기구 설립 및 경영을 허용하며 외국인 독자투자는 불허함.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쌍방은 민사책임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합자·합작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료 위생보건 투자 및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해야함: (1)국제적인 선진 의료기구 관리경험과 관리방법, 서비스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국제적인 선진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3)(중국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함.	단기간내 특이한 변화 가능성 크지 않음.(중국 의료기관과의 개별적 접촉 진행이 주류)

6. 의료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함: (1)반드시 독립법인일것; (2)투자총액 2,000만圓 이상; (3)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중국측 지분비율 또는 권익 30% 이상; (4)합자(작) 기한 20년이하; (5)의료기구의 설치는 ‘의료기구기본표준’(醫療機構基本標準)에 의거함 (6)성급이상 위생보건 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 중서부 지역 또는 소수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 지구에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설치를 신청하거나 설치 신청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국가 권장분야에 속할 경우, 위에 규정한 요구조건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음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중외합자(작) 의료기구는 의료기술 규범과 임상진료기술규범을 집행하고 신기술, 신설비 및 대형 의료용 설비 임상응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함. 중대한 재해, 사고, 유행성 질병, 기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외 합자(작) 의료기구 및 그 위생기술인원은 위생행정부문의 조치에 복종해야함	
기타 사항	외국인 의사는 중국 위생부의 허가증을 취득한후 중국에서 단기 의료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한은 6개월이며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고; 합자병원과 진료소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로 구성. 중국 정부가 의료서비스 부문의 중국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은 외국측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지는 않음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 의료행위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의사는 등록을 거쳐 ‘외국의사 단기의료행위허가증’(外國醫師短期行醫許可證)>을 취득해야 하며; 중국 의료기관의 초청 또는 초빙이 있어야함. 외국의사의 중국방문 단기의료행위 등록유효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한 만료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함.	

6. 의료 서비스

관계 법령.규정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관리 잠정방법’(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 의료행위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 ‘의료위생기구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關於醫療衛生機構有關稅收政策的通知)
----------	---

7. 교육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아래 교육산업 영역의 중외합작교육 서비스를 허용함: (1)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초등교육서비스; (2)국가의무교육을 제외한 중등교육서비스; (3)고등교육서비스; (4)성인교육서비스; (5)기타 교육서비스(영어언어교육 포함) 중외합작교육업의 외국측 다수 권익 확보를 허용함.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고등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중고급 교육기관(중외합자, 합작에 국한)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기초교육(의무교육) 미언급된 영역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자가 본국 교민 또는 기타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교육 기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외국인 독자 투자를 허용함.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中外合作辦學條例)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형식의 투자만 허용함. 중외합작교육 실시자는 각급, 각종의 합작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 군사, 경찰, 정치 등의 특수교육기관은 설립할 수 없음; 외국의 종교조직, 종교기관, 종교대학과 종교종사 교직원 은 중국내 합작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 교육 실시자는 종교교육과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중외합작교육조례'가 규정한 교육 기관은 기본적으로 모두 비경영성 교육기관임. '중외합작교육조례'제60조는 "공상 행정관리부문에 등록된 경영성 중외합작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중이나 확정, 공포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

7. 교육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행정법규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법인자격이 있어야한다. 단, 외국교육기관이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합작교육기관 설립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됨; 중외 합작교육기관설립은 국가의 동급 동종 교육기관의 설립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함.	
경영 내용			중외합작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학력교육(고등학력교육 및 중등학력교육), 비학력교육(문화교육, 취학전 교육, 보습반 등), 직업기능훈련교육 등으로 분류함. 중외합작교육기관은 의무교육단계의 교육서비스 및 종교교육, 종교활동 등을 할 수 없음.	

7. 교육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기타 사항	외국인 개인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중국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초청 또는 고용을 받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1)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2) 상응한 전문명칭 또는 증서; (3) 2년 이상의 전문 업무경험.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는 자금, 실물, 토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합작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중외 합작교육 실시자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각자 투입금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됨. 단, 국무원교육 행정부문, 노동행정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중국내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측 교육기관의 지적재산권 투입은 그 투입금의 1/3을 초과할 수 있음. 법인자격이 있는 중외 합작교육 실시기관은 마땅히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고, 법인자격이 없는 중외 합작교육 실시기관은 마땅히 연합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측 구성인원은 1/2보다 적어서는 안됨.	

관계 법령·규정	‘중외협력교육조례’(中外合作辦學條例) ‘중외협력교육조례 실시세칙’(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細則)
----------	---

8. 요식 및 관광 서비스(호텔, 음식점, 여행사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호텔과 음식점 시설을 건설, 개조,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국측 지배지분을 허용함; 2005년 12월 11일부터는 제한 조치를 해제해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2001년 12월 11일부터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합자 형식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휴양지와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음: (1)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가 여행서비스여야함; (2)연간 전세계 수입액이 4,000만 달러를 초과해야함. 합자여행사/여행경영자의 등록자본금은 400만원에서 2004년 12월 11일부 250만원으로 인하하며 동시에 외자 지배지분을 인정함.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고급호텔, 고급 오피스 빌딩, 국제 회의장 건설 및 경영	외국 여행사의 중국내 상주기구 설립을 허용하나 국가여행국(旅游局)의 기준을 득해야 하며; 이 상주기구는 여행자문, 연락, 선전 등 비경영성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성 여행업무를 할 수 없음. 외국 여행서비스 제공자의 중국내 중외합자, 중외합작(외국측 지배지분, 지배권익 가능), 독자 여행사 설립이 가능하나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旅行社業務經營許可證)을 취득해야함.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 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400만원이며 합자기한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하며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영업시설, 경영인원을 갖추고; 규정에 따라 여행사 품질 보증금을 납부해야함.	합자여행사의 최저 등록자본금 인하 외에는 단기간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향후 시장진입 자격이 완화된면서 어느 업종 못지않게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

8. 요식 및 관광 서비스(호텔, 음식점, 여행사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2007년 12월 11일부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및 지역제한 규정 폐지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법적으로 설립된 회사; (2)최근 3년간 위법 또는 중대한 위규사실이 없을 것; (3)국무원 여행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심사조건과 업종별 요구조건에 부합할 것.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외국측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하는 기업; (2)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 (3)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외국인 다수지분 여행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여행사 또는 여행경영업무를 주요 업종으로하는 기업; (2)연간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4,000만 달러이상; (3)본국의 여행업협회 회원;	

8. 요식 및 관광 서비스(호텔, 음식점, 여행사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4)양호한 국제적 신용 및 선진적인 여행사 관리경험 보유; (5)중국 법률과 중국 여행업 관련 법규 준수. 외국인독자여행사의 외국측 투자자는 상기 (1), (3), (4), (5)의 조건 외에 여행경영 매출총액이 5억 달러이상이어야함. 외국인 다수지분 또는 독자여행사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여행업 발전계획에 부합; (2)여행시장 수요에 부합; (3)투자자관련 규정에 부합; (4)등록자본금 400만달러이상.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자는 국무원이 비준하는 국가지정 휴양지(國家旅游度假区) 및 北京, 上海, 廣州, 深圳, 西安 등 5개 도시에 다수지분 또는 독자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음.	

8. 요식 및 관광 서비스(호텔, 음식점, 여행사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 다수지분 또는 외국인독자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업체별로 1개 씩만 허용함 <u>요식업:</u>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하며 외국인독자(사안별 고려), 합자, 합작 방식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기업이 중국내 1년 이상 양호한 경영 경험을 보유한 경우, 중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관계 법령.규정	‘여행사 관리조례’ 및 실시세칙(旅行社管理條例, 實施細則) ‘외국인 지배지분,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設立外商投資控股, 外商獨資旅行社暫行規定) ‘중외합자여행사 시점 잠정방법’(中外合資旅行社試點暫行辦法) ‘상업 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試行>)			

9. 건축 설계/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국경간 공급 설계 서비스 (Cross-border supply): 제한없음 국경간 공급 기타 서비스 (Cross-border supply): 중국 전문기구와의 합작 요구 외국측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2006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투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그러나,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본국에서 건축/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 건축사/엔지니어 또는 기업이어야함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내역: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도시계획 서비스: 중외합자, 중외합작,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나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外商投資企業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를 취득해야함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구비조건: (1)외국측은 소재국가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전문기술인원이어야 함; (2)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및 관련 공사 관련 전문기술인원 20명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전체 전문기술인원의 25%이상이어야 하며;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원림녹화 분야 외국인 전문기술인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함;	현재는 외국의 설계사가 특정 프로젝트 단위별로 중국의 관련 기관과 합작해 시장 진출을 하고 있음. 2006년 12월 11일부로 외국인독자투자가 전면 허용되면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중국 정부는 현재 관련 심사허가 기준을 손질중임.

9. 건축 설계/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3)국가규정에 부합하는 기술장비와 고정사업장소 보유. <u>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u>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은 '건축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증서'(建築工程設計企業資質證書)를 발급받아야함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독자투자 가능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과 자질심사는 분급(分級), 분류(分流)관리를 시행함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기업의 설립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함: (1)외국인투자자 및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본국에서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분야의 기업, 등록건축사, 엔지니어일것; (2)중외합자(작)경영 건설엔지니어	

9. 건축 설계/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링 설계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함; (3)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자질신청은 반드시 자질등급표준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함; ①독자투자의 경우, 중국등록건축사, 등록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등록 업무집행인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관련 전문설계경험을 보유한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원수가 자질등급별 표준에서 규정한 기술핵심인력 총수의 1/4보다 적어서는 안됨; ②합자(작) 투자의 경우, 상기 인원 기준은 각각 1/8로 적용함	
경영 내용	서비스 포함 범위: (1)건축설계 서비스; (2)엔지니어링 서비스; (3)도시계획서비스(도시의 총체적 계획 서비스 제외)		도시계획서비스란, 도시의 총체적 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함	

9. 건축 설계/엔지니어링/도시계획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기타 사항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 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 (Horizontal Commitments)		<u>도시계획서비스:</u> (1)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 업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할 때에는 중국의 해당 도시 계획 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과 규 범을 준수해야함; (2)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이 고용하는 외국인 기술인원 각각은 매년 중국내 누계 거주 시간이 6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됨.(이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서 비스의 건축사, 엔지니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건설엔지니어링설계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외국기업의 중국내 건설엔지니어링설계활동 종사에 관한 관리잠정규정'(關於外國企業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建設工程設計活動的管理暫行規定)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 기업관리 규정'(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외국인투자기업의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서 관련 사항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建設部關於外商投資企業辦理城市規劃服務資格證書有關事項的通知)			

10. 건축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국경간 공급 건축 및 관련 서비스 (Cross-border supply): 양허하지 없음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허가업종	외국인 독자, 합자, 합작경영 건축 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나 건설행 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건축업 기업 자질증서'(建築業企業資質證 書)를 취득해야함; 이 가운데 중외 합자, 중외 합작 건축업 기업의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등 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함.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전 액 출자로 중국 건축업 기업을 인 수합병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건설업기업은 외국 서 비스 제공자를 기업의 프로젝트 경리로 초빙할 수 있으나 외국 서 비스 제공자는 아래 조건을 구비 해야함: (1)대학 본과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을 갖추고 10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 의 자질신고시 고급직명 인원으	2004년 12월 11일부 독자 진출이 가능해졌지만(신청서 제출 기준) 최근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이 시장진입 애로요인으로 작용. 신규 진출시 경쟁우위 요인이 없 어 외국 기업들은 인수합병 방식 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10. 건축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로 신고할 수 있고; 초급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의 자질 신고시 중급직명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음. (2)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시 자질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등급의 프로젝트 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음: ①외국서비스제공자를 1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 1건 또는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2건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 책임자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함;②외국서비스제공자를 2급 항목경리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건은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의	

10. 건축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할 경험이 있어야함; ③외국 서비스제공자를 3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2건의 공사항목을 담당할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1건은 3급 건축업 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 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를 담당할 경험이 있어야함.	
경영 내용			공사도급 범위: (1)전액 외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 /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2)국제금융기구가 출자,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는 프로젝트; (3)외자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 프로젝트, 외자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	

10. 건축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프로젝트; (4)국내 투자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인해 중국 건축기업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 프로젝트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기준을 거친 것.	
기타 사항	외국적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는 수평적 양허조건을 적용 (Horizontal Commitments)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및 그 보충 규정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 관리 규정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建設部管理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中有關資質管理的實施辦法) '외국인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통지'(關於外商投資建築業企業資質管理工作有關問題的通知)			

11. 컴퓨터 서비스(하드웨어 관련 자문서비스/소프트웨어 서비스/데이터처리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나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함. 기타 서비스영역에서는 제한 조치 없음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s/w 제품 개발, 생산 및 정보컨설팅업	아래 관계 법령.규정 참조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중국기업에 대한 규정임)	외국인투자에 관한 특별한 입법 규정이 없어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투자 장려 또는 허가로 분류됨
관계 법령.규정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회로산업 발전 권장에 관한 약간 정책의 인쇄, 배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國務院關於印發鼓勵軟件產業和集成電路產業發展若干政策的通知) '정보공정감리 잠정규정'(信息工程監理暫行規定) '통신정보망시스템집적기업 자질관리방법'(通信信息網絡系統集成企業資質管理辦法)			

12. 부동산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2005년 12월 11일까지 고급호텔 분야, 외국인투자 허용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부동산서비스업은 합자형식에 한해 허용하되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함	<u>외국인투자 장려업종:</u> 일반 주택의 개발건설 <u>외국인투자 제한업종:</u>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및 경영 <u>외국인투자 허가업종:</u> 부동산 중개서비스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은 중외합자 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1)자기 명칭과 조직기구 보유; (2)고정된 사업장 보유; (3)규정에 따른 재산과 경비 확보; (4)규정에 따른 전문 인원; (5)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부동산 중개회사의 기타 설립조건은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 법규, '공사법'(公司法), '기업등기관리조례'(企業登記管理條例)에 따름	국가 토지심사관리정책으로 외자 진입여건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호텔의 경우, 토지가 수반돼 외국인투자자가 가능하더라도 많은 외국 호텔기업들이 중국 측과의 합작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외국인 단독으로는 호텔 부지용 토지 경매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

12. 부동산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2대 분류: (1)자가 또는 임대자산의 부동산 서비스; (2)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한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개발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4개 자질등급으로 구분함. (1)1급 자질: ①등록자본 5000만元以上; ②부동산개발경영 5년이상 종사; ③최근 3년의 건물건축 준공면적이 누계 30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 투자액 완성; ④연속 5년간 건축공사품질 합격을 100% 도달; ⑤전년도(1년)의 건물건축 시공면적 15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개발투자액 완성; ⑥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분야 전문 관리인원 40명 이상, 그 중에서 중급이상 직명을 가진 관리인원 20명 이상, 자격증서를 가진 전문회계인원 4명 이상; ⑦공사기술, 재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상응하는 전공의 중급 이상 직명 보유; 등	

12. 부동산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경영 내용			가장 낮은 4급 자질의 조건은 아래와 같음: ①등록자본금 100만圓 이상; ②부동산개발경영 1년이상 종사; ③준공된 건축공사의 품질합격률 100%; ④직명을 가진 건축, 구조, 재무, 부동산 및 관련 경제분야의 전문관리인원 5명 이상; 그 중 중급이상 직명 보유 관리인원이 2명 이상일 것; ⑤공사기술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중급이상 직명 보유, 재무책임자 상응한 전공의 초급이상 직명 보유, 전문통계인원 보유; 등	
관계 법령.규정	‘도시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리규정’(城市房地產中介服務管理規定) ‘중개인관리방법’(經紀人管理辦法) ‘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房地產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13. 법률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1)2001년 12월 11일부터 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青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및 기타 도시에 대표처 형식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2)외국 변호사 사무소는 중국내에 1개 이상의 대표처 설립 가능; (3)모든 대표의 중국 체류시간은 매년 6개월 이상이어야함. (4)대표처는 중국 국가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중국 변호사 사무소와 장기 위탁협약체결은 가능)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법률자문	외국 변호사사무소의 중국 대표기구 설립 및 대표 파견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함: (1)본국에서 합법 영업중이며 변호사 직업도덕 및 기율 위반으로 처벌된 기록이 없을 것; (2)공인 변호사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년이상 업무경험을 보유;(수석대표는 3년이상) (3)관련 법령.법규에 정한 기타 조건.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단기간내 실질적인 변화(개선) 전망은 크지 않음. WTO 가입 3주년에 맞춘 개방 계획이 없음. 다만, 외국 변호사 사무소의 중국 대표처 설립(증설) 조건은 점차 완화될 전망.
관계 법령.규정	‘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 ‘<외국 변호사 사무소 중국주재 대표기구 관리조례> 집행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司法部關於執行<外國律師事務所駐華代表機構管理條例>的規定)			

14. 금융 서비스(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보험업: ①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영업허가증 발급; 외국계 보험사는 WTO 회원국에서 30년이상 영업경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 2년후, 전세계적으로 총자산 US\$ 5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증 신청 가능; ②외국계 보험사, 보험중개인은 上海, 廣州, 深圳, 大連, 佛山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11일이전 北京, 成都, 重慶, 福州, 蘇州, 廈門, 寧波, 瀋陽, 武漢, 天津 등지로 확대; 2004년 12월 11일이전 지역제한 전면폐지; ③지역제한 점진 취소로 외자보험사의 지점설립도 가능 非생명보험: ①지점 또는 외국측 51% 지분의 합자기업 설립 가능; 2003년 12월 11일이전 독자 부속기업 설립 허용;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은행, 재무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비생명보험회사는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인투자경영 허용; 생명보험회사는 외자 비율 50% 이하); 증권회사(2004년 12월 11일 외국인투자 비율 1/3 이하 조건으로 허용),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2004년 12월 11일부 외자 비율 49%까지 허용); 보험중개회사(2004년 12월 11일 외자비율 51%까지 허용하며, 2006년 12월 11일 외국인투자경영 허용) 외국인투자 금지업종: 선물회사	은행업: 아래 은행의 설립을 허용함: (1)독자은행(본점이 중국에 있는 외자 은행); (2)외국은행 분행; (3)합자은행; (4)독자재무회사(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자 재무회사); (5)합자재무회사.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1)독자은행, 합자은행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3億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독자재무회사와 합자재무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億元 상당의 자유태환화폐; (2)독자은행 또는 독자재무회사 설립 신청인의 구비 조건: ①금융기관; ②신청인이 중국내 대표기구 설치후 2년이상 경과; ③신청 1년 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100만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금융업 개방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문임. 개방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개방 시기를 최대한 미루어보려는 의도가 보임. 당분간 외국계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음.

14. 금융 서비스(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②외국계 보험사는 종합보험이 가능하며 지역제한 폐지; 제한적 역외기업보험, 외자기업 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도 가능. <u>생명보험:</u> ①외자지분 50%의 합자기업 설립 허용; ②제한적으로 외국인. 중국인 고객에 대해 개인보험 가능; 2004년 12월 11이전까지 의료.단체. 퇴직.연금보험 가능. <u>재보험:</u> ①WTO 가입후 외국계 보험사가 지점, 합자기업, 독자기업의 형태로 생명보험. 非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 취급 가능; ②2005년 12월 11일 이전까지 중국계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무 점진적 폐지.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u>보험업:</u> 아래 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 (1)인체보험 업무의 외국 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외자 비율 50% 이하); 재산보험 업무의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합자보험회사 및 독자보험회사 설립 조건은 아래와 같음: (1)합자보험회사와 독자보험회사의 최저 등록자본금은 2억원 또는 동등한 가치의 자유태환화폐; (2)외자보험회사 설립시, 외국보험사의 자격 요건: ①보험업무 경영경험 30년 이상; ②중국내 대표기구 설치후 2년이상 경과; ③신청 1년전 연말기준 자산 총액 50억 달러 이상; ④기타 관련 구비 조건. 기타 형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상응하는 구비 조건 마련	

14. 금융 서비스(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u>증권업:</u> ①2004년 12월 11일까지 외국계 증권회사가 합자기업(보유지분비율 1/3 미만) 설립후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공사채 거래 및 펀드업무 가능; ②B株 매매업은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도 역내외 거래업무 가능. <u>자산관리:</u> ①증권투자 펀드관리를 위한 합자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측지분은 33%를 초과하지 못하나 2004년 12월 11일까지 49%로 확대).		<u>증권업:</u>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제도상의 자격 요건: ①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는 30년이상 역사를 가진 자산총액 10억달러 이상, 최근 1개 회계연도에 관리하고 있는 증권 자산액이 100억달러 이상; ②펀드관리사는 5년이상 영업실적에 역시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달러이상; ③기타 상업은행은 1개 회계연도의 실적이 세계 100위 이내에 들고 관리증권자산액이 100억달러 이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증권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	
관계 법령.규정	‘기업그룹재무회사 관리방법’(企業集團財務公司管理辦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및 그 실시세칙 ‘중화사비준관리 잠정방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금융리스회사 관리방법’(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 ‘자동차 금융회사 관리방법’(汽車金融公司管理辦法) 및 그 실시세칙 ‘조건부외국기관투자자(QFII) 증권투자관리방법’(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15. 환경 서비스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합자투자만을 허용하나 외국측 다수지분을 허용함.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환경정보자문서비스, 에너지절약개발기술, 재생자원 및 종합이용기술,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사막화 방지 및 사막처리기술 기타 환경서비스는 외국인투자 허용대상임	환경엔지니어링설계서비스 영역은 중외 합자, 중외 합작투자를 허용하며(독자 선례가 있음)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環境工程設計證書)를 취득해야함. 설계증서 취득 시 구비요건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름.	환경분야는 중국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으로써 향후 투자가치가 큰 유망 업종으로 분류됨. WTO 가입 3주년에 맞춘 개방 일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 독자 허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
관계 법령.규정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방법'(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辦法) 환경엔지니어링설계증서 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關御環境工程設計證書管理有關的通知) '환경보호제품 검사기관 자질인가관리규정'(環境保護產品檢驗機構資質認可管理規定) '환경보호시설운영 자질인가관리규정'(環境保護設施運營資質認可管理規定<試行>)			

16. 기타 서비스(포장, 임대, 컨벤션, 인쇄 등)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산업지도목록 규정	입법조치 경과	2004. 12. 11 이후(전망 포함)
시장진입 자격	포장, 임대 서비스는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기업 허용. 기타 촬영, 번역, 국제컨벤션 서비스는 외국측 다수지분을 인정하나 합자 형식에 국한.	<u>외국인투자 제한업종:</u> 화물임대회사는 2002년 12월 11일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년 12월 11일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 허용 기타 일상소비 서비스업종은 외국인투자 허용 분야임	<u>경영성 리스기업:</u> (1)등록자본금 500만달러 이상, 중국측 지분 비율 20%이상 요구; 경영기한 20년 이하 등. <u>전시컨벤션:</u> (1)국제급 규모의 전시컨벤션 경험 보유 요구 등. <u>인쇄:</u> 출판물 및 포장인쇄 분야는 최저등록자본금 1,000만 원 요구(기타 인쇄는 500만 원); 중국측 지배지분 요구; 경영기한 30년 이하 등.	<u>국제컨벤션:</u> 중국 정부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세수 혜택을 내세우며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향후 다양한 방식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 <u>출판물 인쇄:</u> 중외합자(합작)기업의 이사장은 반드시 중국측이 담당하며 이사의 수도 중국측이 다수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두고 있어 당분간 시장진출 기회가 제한적임 <u>자동차 리스:</u> 높은 자본금 규정, 지방보호주의 등이 장애 요인
관계 법령.규정	‘외국인투자 리스회사 심사비준관리 잠정방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외국인투자 전시컨벤션회사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投資會議展覽公司暫行規定) ‘외국인투자 인쇄기업 설립 잠정규정’(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등			

유통시장 진출시 유의사항

이학진 총경리

(태창엘칸토피혁/YEBBN 상하이국제무역유한공사)

국립대만사범대학대학원 졸업

대만LG산전 근무

동양엘리베이터 상하이 지사장

現 엘칸토 중국 제조법인장과 무역법인장

1.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 환경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많은 새로운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 우리 국민이 중국의 이런 정책변화에 대한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올바른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에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고 또는 직접 경험이 없어서 도저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닥치는 불행한 일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잘 포장된 중국시장의 개방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개인이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노력하고 홍보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자는 중국의 현실과 정책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는 빼고 조심해야 할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을 골라 설명하기로 한다. 장밋빛 전망은 다른 편에서 이미 많이 다루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선 중국이 이미 발표한 도, 소매업의 유통 개방 문제인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방을 하는지 언제 개방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이나 매체에서 그저 그들의 발표만 보고 2004년 12월 11일 드디어 중국 유통시장 개방이라고 떠들기만 한다. 아마도 또 뒷북만 치려는가 보다.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 유통개방의 문제점은 우선 30만원과 50만원으로 과연 중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차피 그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건 유인책이거나 WTO에 약속한 내용에 대한 그저 이행을 위한 개방은 아닐까? 이 논조에 대한 이유는 우선 예전에는 20만불이면 보세구에 무역,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자유롭게 모든 혜택을 누리며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무 혜택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 더 나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조금만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빼면 무엇이 좋아졌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지금 필자는 보세구에서 15%의 기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2월 11부로 시행되는 도, 소매업은 아마도 기업소득세가 33%일 것이 확실하다. 중국정부가 공언한대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아마 꼭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내,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25%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증치세(우리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보면 더욱 큰일이다. 현재 중국에서 내수를 하고 있는 제조업 업체나, 보세구의 유통업체들은 17%의 매입 증치세를 모두 상쇄 받게 된다.

그러나 500만 인민폐 (USD약60만불) 이하(50인 고용 이하)의 기업은 아마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어 1년 동안 매출액이 180만 인민폐가 되기 전까지는 매입자료 전체 17%를 모두 상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아니다. 매출에 있어서도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제조업은 6% 영수증만을 유통업은 4%의 영수증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우선 4%의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13%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같은 금액에서 원래는 17%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내 잘못으로 4% 밖에 상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 회사에서는 13%를 우리에게 보존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매입 자료에서 17%를 상쇄 못 받아서 손해 매출 자료에서 13%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총 손해액이 1년간 30%에 달한다. 만약 180만 인민폐이상의 매출이 발생해야지만 제2년차에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면 최소한 540,00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540,000의 손실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 유통업체는 현 보세구의 업체보다 소득세가 18% 비싸다. 일년간 180만원의 매출에 15만원을 장부상으로 벌었다면 27,000의 기업소득세를 보세구 업체보다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아직 접하지 않은 세부시행세칙이 나오면 아마 더 좋아질 리는 하나도 없다. 그저 만만한 기업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과연 우리가 진출하는 업종이 무엇이고 그 업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혹은 저부가가치 산업인지 혹은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기업의 이윤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것을 조사, 예측, 확인 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지가 관건이 되는 중국 기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고의 상권이자 최대의 격전지인 중국 이제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바로 세계인 것이다. “비즈니스는 전쟁”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는 세계 제3차 대전이며 그 최대의 격전지는 상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첨 : 변화된 세금 정책)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신설될 상업, 무역 회사의 증치세 징수 관리강화와 관련된 유관문제에 대한 긴급 통지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국가 특정 세무국:

요즘 세무 당국에서 적발한 증치세 위반 사건을 분석해볼 때 대다수 범죄자들은 적법 회사의 명의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구입해서 많은 금액을 신속히 발행한 후 도망치는 수단으로 국가의 세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는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세금이 대량으로 유실되게 하는 큰 문제가 있다. 동시에 세무기관에서 현재 증치세 일반 납세인에 대한 인정과 관리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하여 진일보되고 완전함을 더한 상업, 무역회사의 일반 납세인 인정 관리 시행세칙을 결정하여 세무 당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를 통지한다.

一。 신설될 상업, 무역 회사의 일반 납세인에 대하여 차등하여 관리를 한다.

- (1) 신설한 상업 무역 회사서 현재 연간 영업액으로 증치세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새로 신설한 상업, 무역 기업에서 세무등기 일로부터 일년간의 영업액이 180만원을 도달했을 경우 일반납세인 인정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a. 새로 개업한 상업 무역 회사에서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소규모 납세인으로 인정 관리 한다.
 - b. 일년간의 영업액이 180만원이 된 후 세무 당국에서 회사에 대한 신청자료와 실제 운영상황, 납세 상황을 심사 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납세인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납세 교육, 보조, 감시제도를 실시한다.
 - c. 그 기간이 끝난 후 주관 세무당국의 동의를 얻은 후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변경하고 일반 납세인으로 관리한다.
- (2) 고정된 영업장소가 없으나 판매하는 실물이 있는 회사와 신설 상업 회사와 주식 자금이 500만원 이상, 사원이 50명 이상인 중, 대형 상업, 무역 회사들은 세무등기 할 때 일반 납세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

며 또한 바로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직접 교육, 보조기에 들어가서 교육기 일반 납세인으로 관리한다.

교육기가 끝난 후 주관 세무부의 동의를 얻어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변경하고 일반 납세인으로 관리한다.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일정한 경영 장소가 있고 고정된 상품 경영방식이 있고 완벽한 관리와 재무 계통이 있는 대중 상업 회사에서는 교육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二。신설한 상업, 무역 회사의 일반납세자 자격 심사, 비준 관리(審批管理).

일반 납세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새로운 상업, 무역 회사에 대하여 주관 세무당국에서는 일반 납세인에 대한 표준과 과정을 엄격히 지키는 동시에 신청 자료를 엄격히 심사 한다. 유관 상황에 대하여 회사 유관인원과 면담 하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현장 검사한다(2인이상). 신청한 자료와 검사결과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료에 대한 심사

상업, 무역 회사의 일반 납세인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었는가를 심사 한다.

(4) 면담

면담의 근본 목적은 면담을 통하여 회사의 영업상황을 이해하고 일반 납세인의 상세한 정황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회사의 법정 관계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 상황, 회사 제도, 조직 구조, 관리층 상황, 경영 범위, 경영 상황 등 회사 구체적 상황을 이해한다.

회사의 투자인과의 면담을 통해 투자인과 회사 경영관리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회사의 재무인원을 회담을 통해 회사의 은행 계좌번호, 주식 자금, 경영 자금, 영업수입, 재무 현황, 납세현황, 실제 납세 현황 등을 이해한다.

회사의 영업, 구매, 사원들과의 회담을 통해 회사의 영업, 구매 등 업무의 진실함을 확인한다.

면담내용은 기록하여 회담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야한다.

(5) 현장 검사

현장 검사는 신청 자료에 대한 확인이다. 현장 검사할 때 반드시 2명(이상)인 세무당국 인원이 통행해야 한다.

검사내용은 : 영업자격 증명서 (營業執照) 세무 등기증(稅務登記証)
회사 경영 장소에 대한 소유증 혹은 임대증명, 원자재와 상품 입고
출고 증명, 운수비 영수증, 수도세와 전기비 영수증, 법정관계인과 주
요 관리인원들의 신분증명서, 채무인원의 자격증명서, 은행 통장 증
명서, 유관 부문에서 심사한 자본금 입금 보고서, 회사 계약서 원본
과 공증서류, 자금 왕래 장부 등.

현장 검사에서 생산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생산 공장, 설비 등 필
수한 생산설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영업장소와 상품 실물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대.중형 상
업, 무역 기업에서는 실자본금 납입금액, 은행 저축 증명서, 은행 계
좌번호와 회사 직원수를 중점으로 검사한다.

三。교육기의 일반 납세인에 대한 관리

일반납세인의 교육기는 최소 6개월이다. 교육기때 세무당국에서는 증치세
법과 제도를 선전하는 동시에 아래의 방법대로 증치세를 징수 한다

1. 소규모 상업, 무역회사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유관 직원들과의 면
담, 실제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증치세 영수증 수량과 한도액 수준을
정한다. 한 장의 증치세 영수증은 만원을 초과하지 못 한다. 영수증
의 구매는 순서와 수량에 따라 공제 한다. 주관 세무당국에서는 회사
의 실제 영업액에 따라 매번에 쓸 영수증을 발급한다. 매번 발급한 영
수증은 25권을 넘지 말아야 한다.
2. 상업, 무역 소매 회사에 대하여 주관 세무당국에서는 회사의 실제 정
황에 따라 증치세 영수증은 수량과 한도액을 정하여 (限量限額) 발
급한다. 증치세 영수증에 최고 한도금액은 해당 세무당국의 규정에 따

른다. 영수증의 발급도 순서와 수량에 따라 발급 및 공제 한다 . 매번 영수증은 25권을 넘지 말아야한다 .

3. 회사가 매번 구매한 영수증이 그달의 영업액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신청 구매할 수 있지만 매번 그달의 영업액의 4%를 증치세로 우선 지급해야한다. 우선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세무당국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4. 매월 최초로 구매한 영수증을 해당 달에 다 못쓰는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다음달 영수증을 발급할 때 다음달의 사용 정황에 따라 감소 할 수 있다.
5. 매달 마지막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그 달 말 다 못 쓴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는 다음달 영수증을 발급할 때 매월 사용한 수량에서 지난달 사용하지 못한 수량 만큼을 감한 부분만을 발급한다.
6. 교육기 때 상업, 무역회사가 취득한 증치세 영수증, 세관 수입 전용증치세, 폐물품 및 구물품 전용영수증, 화물 운송 영수증 등은 검사 합격된 후에야 상쇄(抵扣)할 수 있다.,
7. 회사가 다음달 납세 신청할 때 일반 납세인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그 방법대로 계산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미리 지불한 증치세 금액이 지불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유관기관의 평가 후 다음 번 세금 납부 때 경감할 수 있다.

四 ° 정상적인 일반 납세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심사 및 비준관리(審批管理)°

(1) 정상 일반 납세인으로 전환에 관한 심사 및 비준

납세 교육기가 6개월이 지나면 주관 세무기관은 상업, 무역업체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에 관하여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납세평가결론이 정상
2. 면담, 현장검사 결과가 정상
3. 업체신청보고서, 납부한 세금액이 정상

4. 업체가 매입, 매출세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전용영수증과 정상적인 매입세액경감(抵扣) 서류를 취득, 처리 되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업, 무역업체에 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납세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정상 일반 납세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관리

상업, 무역업체가 교육기가 끝나고 나서 정식 일반 납세인으로 전환한 후, 원칙적으로 말하면 증치세 위조방지세금공제 영수증처리 시스템의 최고제한금액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교육 기간 내에 실제 매출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세금납부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업체에 대하여서는 심사를 거쳐 10만원 이내 전용영수증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만원 이내 전용영수증을 처리하는 소규모의 상업, 무역업체가 대량의 무역을 진행할시, 국가공증부문의 화물 교역 협의서에 근거하여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치면 적당한 수량의 10만원 이내 전용영수증처리가 가능하다.

중·대형 상업, 무역업체가 교육기간이 지나 정식 일반납세인으로 전환한 후, 증치세 위조방지세금공제영수증처리 시스템의 최고제한금액은 해당세무기관이 해당업체의 실제경영상황에 근거하여 현재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五. 각 지방 세무기관은 본 통지 전에 일반 납세인으로 전환된 소규모 상업, 무역 업체(특히 세무등기시간이 일년 미만인 소규모상업, 무역업체)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사를 한다. 회계인원고용, 회계장부설치, 회계 심사 방법 등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 처리가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보관하여 엄중한 과오를 빚어냈거나, 고정된 경영 장소가 없는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소한다. 각 지방은 소규모 상업, 무역업체의 증치세 관리에 특별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소규모 상업, 무역업체 증치세 감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六. 매월 증치세납세신고가 끝난 다음날, 징수부문은 증치세 납세신고 혹은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위조방지 세무 컨트롤 IC시스템으로 세금신고 하지 않은 업체 포함) 업체 및 세무기관의 동의가 없이 증치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의 이름을 관리부문에 보고해야한다. 관리부문은 필히 즉시 현장 조사를 해야 하며 만약에 업체가 도주한 경우 당일에 세무등기 및 영수증 관리 부문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치세 일반납세인 도주 보고서" 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는 했지만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전용영수증내용과 함께 시, 성 및 세무총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관련은행에 통지하여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동시에 공안에 신고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필히 도주한 상업, 무역업체의 영수증 내용 전자데이터를 그날로 상위에 보고해야 한다. 총국에서는 7월초에 비정상업체에 대한 영수증 쾌속반응시스템을 실시하여 이미 인증된 영수증과 인증되지 않은 영수증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전국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영수증 내용을 당일 내에 동시에 갱신되도록 할 것이다. 총국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도주 보고서"내용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한다.

七. 본 통지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본 통지의 제1조 (一)와 제5조의 내용은 통지를 발송한 그날부터 실시한다.

2. ELCANTO, YEBBN, TEI.TITETI 브랜드의 중국진출

엘칸토는 1996년 8월 중국에 처음 진출했다. 영업을 먼저 진출하여 로드샷을 중심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했으나 실패였다. 우선 대련의 가장 유명한 거리에 년 120만원을 주고 로드샷을 열었고 120만원을 내기에도 힘들었다. 수입품인데다 임대료를 형편없이 많이 주고 입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상해의 그저 그런 거리에 년 100만원을 주고 또 로드샷을 열었는데 이마저도 3배 이상 비싸게 주고 입점한 것이었으니 장사가 될 리가 없었다. 내가 9월 20일 입사를 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진출 전략과 전쟁을 시작했다. 새로 입사한 경력사원의 힘이 얼마나 크겠는가?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 문제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았다.

가) 로드샷 진출 : 우선 외국인을 상대로 2중 가격을 받았던 두 군데의 로드샷을 모두 정리하고 주변의 유명백화점에 수수료 매장으로 진출하여 자금회전과 위험요소를 모두 해결하였다.

중국 광주, 심천 지역을 제외하고 로드샷에서 성공한 지역 그리고 업체는 거의 없다. 중국인의 구매 패턴을 모르고 진출했기 때문이다. 의심이 많은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던가! 백화점에서 산 물건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품이나 교환이 수월하나 로드샷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당연히 백화점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광고목적용 로드샷이나 세금절약용 로드샷은 괜찮다. 그러나 수익을 바라고 로드샷을 여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타인명의의 법인으로 영업 : 법인이 없으니까 중국인 명의의 법인을 빌려 진출하였다. 그러나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기듯이 우리의 이익은 거의 모두 상대방의 회사에 넘어갔다고 봐야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법인을 세워 물건의 공급과 백화점과 계약할 수 있는 법인의 소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즉, 타인 명의의 모든 백화점 계약을 모두 엘칸토 공장으로 돌렸다.

다) 중국화 : 초기 진출 당시에는 서울에서 구두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입을 했

다. 그러나 그때 중국의 수입관세가 30%를 넘어 문제가 많았고 매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 비싼 구두를 살 수 있는 층이 지금은 4,0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아마 400만도 안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강소성 태창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직접 구두를 제조해서 공급을 하였다. 우선 관세가 싸졌고 제조단가가 반밖에 되지 않아 수입화를 할 때 보다 판매가가 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수입품이 중국산이 되면서 고객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디자인과 컨셉이 유지 되면서 그리고 광고를 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었다.

- 라) 리오더제품 공급시기 문제 : 자재를 서울에서 100% 공급 받으면서 베스트 상품의 공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자재준비하고 보내고 통관하고 다시 제품을 만드는데 까지 IMF 이후에 4주에서 6주까지 걸리기 시작했다. STOCK 자재 재고 제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리오더를 하면 그때부터 자재 발주가 들어갔고 우리는 시즌을 놓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타기 시작했다. 시즌이 지난 신발은 재고로 남았고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다음 시즌에 처리를 하는 선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중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공급선을 다양화 하고 중국자재를 개발하고 수입품을 20%선 안에서 들여와 고급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광고효과를 보았고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오더량 확보를 했으며 판매처를 다각화 하였다. 즉, 재고 처리를 위하여 상해, 북경을 포함한 거점 지역을 제외하고 상설매장을 두어 재고를 소진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 중고가로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였다. 공급선이 다양화되면서 OEM 공장에서는 납기를 지켜야 했고 서울자재나 제품은 부담이 적어지면서 항공으로 공급을 받아 그 시기를 조정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 마) 상이한 신체조건으로 인한 제품교정 : 중국여자는 우리나라 여자들보다 발등이 높은 반면에 발이 좁다. 그러니 우리제품의 등 부분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또, 겨울 부츠는 중국여자의 종아리가 가늘어 우리제품을 신으면 멋이 안나 문제가 되었다. 패턴을 중국용으로 따로 개발을 해야 한다.

바) 문화의 차이와 제품 구성 : 중국의 고가제품의 소비군은 여자들을 놓고 보았을 때 대략 3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을 제외하고. 그러니 약간만 아동틱하거나 귀여우면 모두 안 팔렸다. 그 후에는 귀엽거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가는 디자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도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원색의 옷도 피했으나 지금은 원색의 옷은 피크닉의 대명사로 모두 몇 벌씩 가지고 있다. 신발류도 향후에는 캐주얼 신발이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문화도 경제와 수입 문제와 더불어 연동되어 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은 요즘 겨울용 부츠를 거의 개발하지 않는다. 비싸기도 하지만 추운 곳이 거의 사라지고 사무실에서 롱부츠를 신고 있으면 왠지 촌스러워 보여서 이제는 한물 간 것으로 취급 받는다. 다만 싸구려 어그부츠 같은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파고들어 대 히트를 하는 정도지 지속적인 아이템은 아닌 것이어서 한국 제화업체는 이제 부츠를 거의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틀리다. 부의 상징이며 그리고 멋의 상징이고 남방은 남방대로 춥지만 난방장치가 된 곳이 적어 어디를 가도 춥다. 그리고 여전히 유행이다. 그래서 대개의 업체들은 겨울을 대목으로 보고 부츠 개발을 100여종씩 한다. 그러나 우리는 10종도 안 된다. 그러니 무슨 게임이 되겠는가? 그래서 OEM을 주어 해오고 있으나 그게 해결책은 아니어서 중국 전문 디자인을 두어 부츠 개발과 샌들 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예쁜(YEBBN)이라는 브랜드는 100% 완전 수입 브랜드로 중국 상해의 최고 상류층 바로 아래 부류를 공략한다는 작전으로 런칭을 하고 있다. 최 상류층은 이태리 구두만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부류인 중소기업 사장 이상, 전문직 엘리트 여성을 대상으로 도발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중국 상해의 여자들은 강하다. 그 표현을 구두에서 더욱 빛나게 해 준다는 기치아래 디자인을 개발 의뢰하고 그 컨셉에 맞추어 차별화를 시도하여 20만원 이상 60만원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신규 브랜드로서는 광고 한번 없이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지금은 매장 확대 시기만을 조율하고 있으며 백화점 바이어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면서 1급 브랜드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엘칸토의 힘도 매우 컸고 틈새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의 큰 회사와의 경쟁을 피하면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었던 해안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직은 이름이 없더라도 중국에서 좋은 품질을 자지고 한류의 영향을 등에 업는다면 MADE IN KOREA가 먹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도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다. 1~2년 이내에 중국시장도 브랜드 시대가 열린다. 이 안에 중국시장에서 브랜드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진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쁜의 성공에는 자재의 차별화, 공급의 로스율 제로, 제품의 고급화, NO SALE, 불량률 제로 목표, 이태리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 경쟁 모두 피하는 틈새시장 공략, 컨셉의 적중,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

TEL.TITETI라는 브랜드는 내년부터 중국 중고가 시장을 겨냥해서 새로 만든 브랜드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층과 미시들을 겨냥해서 인민폐 500 - 600원 사이의 제품을 통해 최고 시장을 진출하려는 야심 찬 브랜드이다. 다만 이 시장층의 경쟁이 치열해서 성공의 보장은 없다. 다만 이제까지의 노하우와 젊음을 기초 삼아 중국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 보고자 한다. 이 브랜드는 중국의 구두 생산 중심지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인 디자이너와 개발인력 그리고 경영진을 투입해 단 시일 안에 많은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국 !!! 이제 최고가 아니면 최대가 아니면 최다가 아니면 결국에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브랜드가 다 진출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지리적, 문화적 우위를 이용해서 빨리 중국시장에서 그 터를 닦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중국의 백화점 그룹들은 너도 나도 선점을 위해 중국전역에 백화점을 건설하고 있다. 지금 그들의 입점 요구를 거부한다면 후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제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 모든 기업들이 말이다.

3. 중국 유통시장 진출시 유의할 점

중국 유통시장은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그만큼 조심해야할 부분도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험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 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자.

중국시장은 우선 숫자로 볼 때 미래가치가 뛰어난 시장이다. 상류층 인구가 이미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의 숫자도 많아서 향후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고가시장이 BEP선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얼마 전 중국인민은행장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 전체의 급여수준은 현재 미국의 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주 장밋빛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대륙 자체가 너무 넓어서 유통에 필요한 물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4천만을 도시별로 감안할 때 과연 도시별 오픈 가능한 한국제품의 매장수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거기에 브랜드 지명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한국기업은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필자가 보는 문제점은 이렇다.

가) 진출 시 입점 문제

많은 중국 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가 이미 “우리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업체다”라는 말을 못이 박히도록 들어 믿지 않는다. 그런 업체들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도 그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입점 상담할 때 예전처럼 쉽게 우리업체와 우리 제품이 평가받지 못한다. 그래서 입점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출발 할 여지가 많고 그러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배에 배가 된다.

나) 한국 본사의 조급증

실험이나 해 보자는 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가 많아서 우리의 이미지를 깎아 먹고 있다. 1, 2년 안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진출을 하고 그러다 보면 1, 2년 안에 철수를 한다. 중국시장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시장이다. 미래의 해안을 가지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업체는 국가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진출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업체에 피해를 주게 되고 자신도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만약 진

출을 결정하게 되면 중국시장을 믿고 기다리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전력해야 한다.

다) 재고 처리 불능

중국의 많은 업체 중에서 특히 홍콩, 대만, 화교계 업체들은 이미 진출 시기가 빨라서 중국에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세일행사를 한다거나 재고처리를 위해서 창고를 개방한다는 소문이 나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업체의 부담을 단숨에 해결해 준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은 브랜드 수준도 수준이려거니와 단가에서 그들과 상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재고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매우 적고 교민을 상대로 하는 편협적인 행사에 매달려 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고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의 고리에 회사가 흔들리게 된다. 신제품 오더에 인색해 지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줄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백화점에서 퇴점을 당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악순환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는 얘기다. 재고처리는 결국 회사의 브랜드 파워와 같이 간다. 브랜드를 키우지 않고 한국제품이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본사는 규모가 커서 여기서도 그런 줄 아는 건방진 생각은 빨리 버릴수록 이익이다.

라) 차별과 편견

한국 업체임과 동시에 중국에서는 많은 돈을 더 물어야 한다.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에게 받는 고단가의 견적서를 받지 않은 업체는 이해를 못한다. 중국인이 가서 사 온 지도 한 장과 한국인이 가서 사온 지도 한 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백화점 인테리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두 배는 더 줘야 가능하다는 소리도 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품질도 보장되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업체에 공사를 주는데 마찬가지로 가격은 비싸다. 중국 로컬 업체와 기본적인 제품 단가와 매장을 오픈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에 필요한 비용이 다 비싸다. 그래서 같은 제품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특히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같은 물건의 같은 자재를 써도 하늘과 땅 차이의 원가 구성 때문에 땅을 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마다 틀리기는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한 업체는 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유명한 E 그룹의 브랜드는 필자가 설명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이미 거의 다 해결하고 중국사업을 진행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공한

업체가 드물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꼭 필요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제 수업료를 내면서 유통시장 진출을 할 시점은 지났다. 철저한 계획 없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지는 말자.

마) 중국 업체와의 정면 대결

중국의 유통시장은 홍콩, 대만을 위시한 화교자본이 이끌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막대한 자본의 힘으로 중국시장을 중국개방 전부터 유통시장 개방이 임박한 지금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시장을 진출하는데 있어서 우선 언어의 장벽이 없고 문화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쉽게 관리를 장악할 수 있고 중국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생산기지를 거의 갖추고 있어서 중국화에 성공 원가를 최소로 줄여 놓았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하는데도 그 역력이 모자라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수입을 하는 업체들은 단가 문제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가지고 정면대결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가 그들이 손을 놓고 있는 고가 제품에 치우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이 매우 미흡하다. 다만 중국의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을 계속한다면 이 시장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계위라 하면 위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유통시장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은 더 이상 늦지 않게 빨리 중국화에 박차를 가해 최대의 격전지인 중가 시장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무궁무진한 그 시장이야 말로 중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중국법의 이해

중국은 수시로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WTO에 가입 하면서 그리고 발전하는 중국경제에 발을 맞추는 것이기에 거기에 토를 달 일은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가 진출을 하면서 그런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많은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명심에 명심을 해야 한다. 이번 유통 개방과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2004년 12월 11일 유통 개방 법률, 현재 세무시행 세칙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사) 문화의 이해

중국인의 습관과 관습을 이해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하면 아무리 아이템이 좋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 예로 중국인은 아기를 하나밖에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복 시장에 수입품을 가지고 진출을 한다면 여성복처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중국인의 문화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아주 잘못된 진출이고 성공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봉어빵이나 호두과자를 가지고 진출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그것이 중국 전역에서 될 것이라고 매장을 늘려서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한 지역에서도 소비형태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시장을 완벽히 조사하지 못하면 그들의 문화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 진출 형태의 결정

백화점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매장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는 성공과 실패의 단락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제조업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통업으로 진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두 형태를 모두 가지고 진출을 할 것인가를 진출 목적에 맞게 잘 결정해야 한다. 그저 공장에서 100% 제조해서 그 제품만을 가지고 중국시장을 개척한다면 제조업 등록만으로도 중국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아웃소싱이나 수입을 겸해야 한다면 유통업 법인을 같이 오픈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수입과 아웃소싱만을 가지고 무제조업 형태를 가진다면 유통, 무역업으로 등록을 하면 모두 OK다.

자) 중국인의 능력 배양

원가를 줄이고 경비를 줄이는 최대의 방법은 중국인의 인재화다. 한국인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업종이나 회사는 진출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일을 한국인이 하는 것과 중국인이 하는 것은 비용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출장을 가도, 호텔을 써도, 바이어와 밥을 먹어도 그리고 기본 고정 비용에서조차 2배에서 10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의 인재를 중시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중국의 시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끝>